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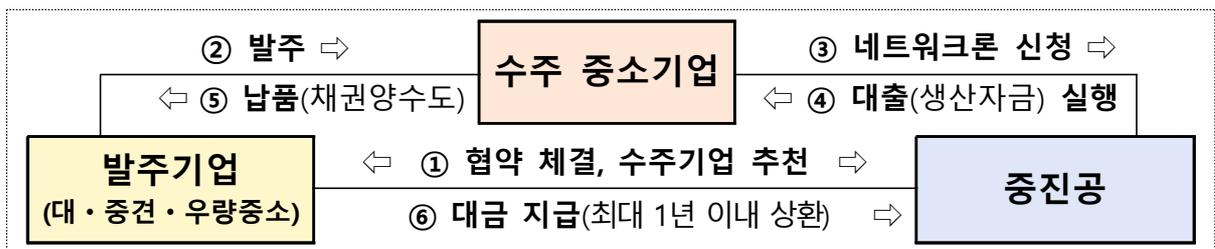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

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

1 사업개요

- (지원목적)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·중견·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
- (지원방식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-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(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)



- * 수주기업 : 계약(발주서)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
- * 발주기업 :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

- (기대효과)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
-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

2

신청 및 지원절차

가. 신청대상 및 예산

- 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
 - *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 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(동일 사업자번호 기준)를 보유하면서,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*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 - *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(다. 지원절차 ② 참고)
- (대상채권)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*로,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
 - * 품목/발주금액/납품기한/발주서만기일/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, 물품구입주문서, 구매승인서, 계약체결확인서, 물량확인증, 연간계약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
 - *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예산규모 : 1,395억원('25년)

나. 신청접수

- 신청방법 :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'25. 1. 9. ~ 예산소진 시까지

다. 지원절차



- ① (자금신청)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* 실시,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

*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 제한

- ② **(회계정보 등록)**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* 등록(발주기업·수주기업 모두 필수)
 - * 회계정보 :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
 - * 단, 발주기업이 대·중견기업,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, 발주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
 - *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 (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)
- ③ **(기업심사)** 중진공이 비대면 방식으로 네트워크론 신청(수주)기업 및 발주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
 - *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+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
 - * 대·중견기업,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평가 가능
- ④ **(지원결정)** 기업평가 후 지원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산출하고, 신청기업이 이자율 수락 시 최종 지원 결정
- ⑤ **(약정체결)** 수주기업의 대출 약정 체결
- ⑥ **(대출금 지급)** 중진공이 신청(수주)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입금
- ⑦ **(납품, 채권양수도)** 수주기업의 납품 완료 후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
- ⑧ **(대출금 상환)** 발주기업은 네트워크론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 대금 지급

3 지원조건

가. 지원조건

- **(건별 한도)**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% 이내
- **(연간 한도)** 수주기업 15억원*,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**
 - * 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3 이내 (제조업 1/2이내)
 - * 1회당 신청한도(금액)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(회계정보 기준,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)
 - **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150억원 이내, 대기업 200억원 이내
- **(지원기간)**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~365일(15일 단위)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·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(최대 1년)
 - * 대출기간 180일 초과 경우,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**(금리)**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 - *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

나. 네트워크론 지원 제한기업

구분	적용	내 용
①	공 통 (발 주 · 수 주 기 업)	휴·폐업 중인 기업
②		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③		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,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
④		한국신용정보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⑤		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
⑥		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(별표)을 영위하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사차항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) -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업종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) -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(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)
⑦		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-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
⑧		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⑨		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(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)
⑩		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- 3년 연속 '이자보상배율 1.0미만'기업 (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(비)율 1.0미만으로 간주)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
⑪	수 주 기 업	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(단, 제조업, 혁신성장·초격차·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)
⑫		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가증권·코스닥 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-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 * 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-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적용 예외 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100·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

[문의]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,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(☎ 1811-3655),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☎ 02-3211-5606)

※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.

<별표>

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*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1)	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(42203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5 中	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제외